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 『연금하나 통장』 특약

2. 변경의 필요성 : 우대금리 명시

3. 주요 변경 내용 : 기본금리 상시 제공

4. 신구 조문 대비표 : 하단 참조

5. 시행(예정)일자 : 2019년 3월 16일

6. 사후보고 근거 :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제①항에 의거 사후보고

7. 상품의 특징 :

연금입금 하나로 우대금리와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수급자 전용 통장

8. 약관본문 (전체) : [첨부] 참조

9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1조 약관의 적용 ~ 제5조 이자지급 (생략)	제1조 약관의 적용 ~ 제5조 이자지급 (좌동)	
제6조 우대금리 적용	**제6조 우대금리 적용**	
①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아래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,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5조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	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아래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.4%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	**우대금리 명시**
1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2.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: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 3. 기타연금 :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	1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2.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: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	**기본금리 상시적용**

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 ②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액 구간에 제5조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 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~ 제8조 상품전환 (생략)	3. 기타연금 :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 ② 삭제 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~ 제8조 상품전환 (좌동)	

(개정전)

2018. 9. 3 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-약관-79호(2018. 7.12)

「연금하나 통장」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「연금하나 통장」(이하 "이 예금" 이라 한다)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,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과목은「저축예금」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,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제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5조 이자지급

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(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), 최초 예금일(또는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(또는 지급일)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, 아래 기준일에 셈하여 익일(이하 '원가일')에 원금에 더합니다.

- 이자계산 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
②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, 전환일부터 전환후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6조 우대금리 적용

①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아래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,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5조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1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
2.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: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
3. 기타연금 :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

②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액 구간에 제5조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

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항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)

1. 연금하나 우대 : 이 예금에 제6조 제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시, 수수료우대 Ⅰ(횟수제한 없음) 및 수수료우대 Ⅱ 총합 월5회 제공

2. 연금플러스 우대 : 이 예금에 제6조 제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및 주거래이체실적(주) 1건 이상 충족 시, 수수료우대 Ⅰ(횟수제한 없음) 및 수수료우대 Ⅱ 총합 월10회 제공

(주) 주거래이체실적 : 건당 50만원이상 급여 입금, 하나카드/현대카드 결제대금(신용,체크), 아파트관리비 출금, 공과금 출금, 하나카드/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,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(청년 우대형 포함)

3. 하나멤버스 우대 :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Ⅰ 총합 월10회 제공

(수수료우대 Ⅰ)

-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- KEB하나은행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면제
-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

(수수료우대 II)

-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수수료 면제(주2)
-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
(주3)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,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 하며,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 제휴 CD기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는 수수료면제가 제공되지 않음.

② 이 예금 신규 가입후 다음달까지는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Ⅰ 를 총합 월10회 제공합니다. 단, 가입월에 제7조 제1항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후 다음달부터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적용합니다.

③ 다른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시, 전환하는 달의 수수료면제횟수는 기존 상품의 수수료 면제 잔여횟수를 적용하고, 익월부터 이 예금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에 따른 면제혜택을 제공합니다.

제8조 상품전환

저축예금인 경우,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

(개정후)

2018. 9. 3 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-약관-041호(2019.02.25)

2019. 3.16 개정

「연금하나 통장」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「연금하나 통장」(이하 "이 예금" 이라 한다)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,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과목은 「저축예금」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,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제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5조 이자지급

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(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), 최초 예금일(또는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(또는 지급일)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, 아래 기준일에 셈하여 익일(이하 '원가일')에 원금에 더합니다.

- 이자계산 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
②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, 전환일부터

전환후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6조 우대금리 적용

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아래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.4%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

1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
2.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: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
3. 기타연금 :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

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

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항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)

1. 연금하나 우대 : 이 예금에 제6조 제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시, 수수료우대 Ⅰ(횟수제한 없음) 및 수수료우대 Ⅱ 총합 월5회 제공

2. 연금플러스 우대 : 이 예금에 제6조 제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및 주거래이체실적(주) 1건 이상 충족 시, 수수료우대 Ⅰ(횟수제한 없음) 및 수수료우대 Ⅱ 총합 월10회 제공

(주) 주거래이체실적 : 건당 50만원이상 급여 입금, 하나카드/현대카드 결제대금(신용,체크), 아파트관리비 출금, 공과금 출금, 하나카드/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,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(청년 우대형 포함)

3. 하나멤버스 우대 :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Ⅰ 총합 월10회 제공

(수수료우대 Ⅰ)

-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- KEB하나은행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면제
-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

(수수료우대 Ⅱ)

-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수수료 면제(주2)
-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
(주3)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,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 하며,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 제휴 CD기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는 수수료면제가 제공되지 않음.

② 이 예금 신규 가입후 다음달까지는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Ⅰ 를 총합 월10회 제공합니다. 단, 가입월에 제7조 제1항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후 다음달부터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적용합니다.

③ 다른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시, 전환하는 달의 수수료면제횟수는 기존 상품의 수수료면제 잔여횟수를 적용하고, 익월부터 이 예금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에 따른 면제혜택을 제공합니다.

제8조 상품전환

저축예금인 경우,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